# 자체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 2023



## 차 례

1. 자체평가 시스템
가. 목 적(
나. 추진방향
다. 추진일정(
라. 비전 및 전략
2. 자체평가 방법
가. 추진체계 및 조직
나. 평가시스템 및 모형
다. 자체평가 절차1
라.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핵심1
3. 자체평가 결과
가. 총평12
나. 영역별 평가결과 <표1>12
4. 평가결과 활용계획/평가개선방향1(
(부록.)자체평가에관한규정1

## 1. 자체평가 시스템

## 가. 목 적

	대학의	자가진	!단 및	평가	시스템	정착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 수	≥요자에	대한	대학교	교육의	질에 대	한 보증	등 체제	확보		
	대학의	질적 :	수준 힝	<b>:</b> 상을	위한 다	H학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П	군 제 전	소주 <b>ㅇ</b>	1 고등	교육 작	및 보증	체제이	화대()	н гнні	대한이	평가연량	강호

## 나. 추진방향

대학 혁신과 특성화를 위한 자체평가
대학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대학 내 업적, 성과관리를 위한 내부 관점의 평가, 특히 과거 실적과의 비교
를 통한 자체관리용 평가 등을 포함
북한 · 통일 전문 대학원대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한 자체평가 모형 수립
대학정보공시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의 평가목적과 필요에 의해 평가
대상과 평가영역 등을 확장하여 평가모형을 구성

## 다. 추진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수집	•	•								
자체평가 T/F 구성	•	•	•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	•	•				
관련 규정 제·개정				•	•	•				
자체평가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					•	•				
자체평가 모형 구축 및 확정					•	•	•			
학내 의견 수렴						•	•	•	•	
자체평가 실시								•	•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자체평가 결과 공시										•

#### 라. 비전 및 전략

통한 교육수준

교육인프라 확충.

교과목 확대와

질적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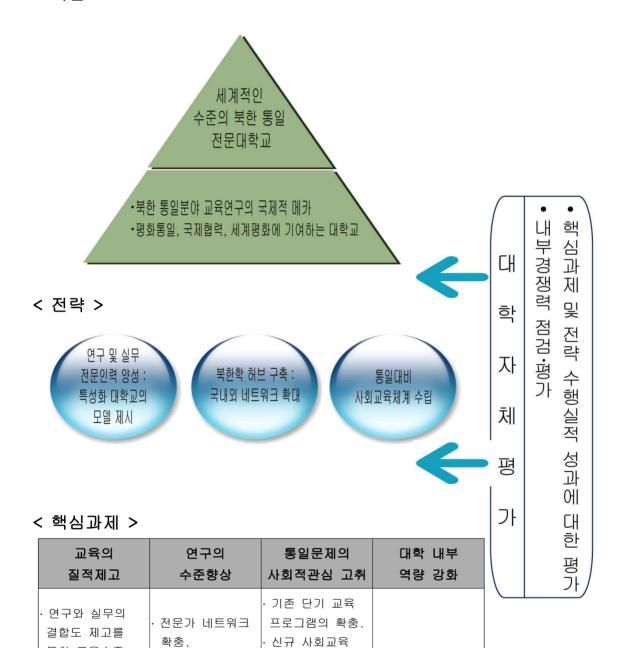
향상.

국내외 학술활동

및 학술교류 활성

연구지원체계확충

### < 비전 >



프로그램의 신설.

경협인력, 교사를

위한교육프로그램

강화

• 재정기반확충

사회지도층, 남북 · 직원교육훈련강화

### 2. 자체평가 방법

#### 가. 추진체계 및 조직

#### ■ 추진조직 및 역할

	자체평가위원회	전담조직(평가팀)		
임기	2년	2년		
위원장(팀장)	교학처장	기획조정처장		
¬ Ы	- 교학처장	- 기획조정처장		
구성	- 기타 전임교원 3명 이상	- 직원 2명 이내		
	- 자체평가 기본방향과 전략의 수립	- 자체평가 실시		
여하	- 자체평가 예산 확보	- 자체평가보고서 집필		
역할	-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자문	- 자체평가 관련 실무 처리		
	- 자체평가 모형의 개발, 연구	- 자체평가 관련 행정지원		

#### 나. 평가시스템 및 모형

#### ■ 자체평가의 대상

-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사항
- 평가 영역: 종합평가 및 교원업적 평가

#### ■ 평가항목 지표

- ① 평가 영역의 구성 및 가중치
- 3개 평가영역, 9개 평가부문, 14개 평가항목/지표로 구성
- 각 영역, 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도록 조정
- ② 평가 지표 선정
- 대학정보공시지표(9개)와 자체선정지표(5개)로 구성
- 지표는 모두 정량지표
- ③ 평가 기준의 선정
- 대학원대학교의 특성상 여타 종합대학교의 평가지표 활용에 곤란
- 대학원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 기준 설정
- 대학의 실정과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목표치와의 비교가 핵심

## ■ 평가항목 기준

구분(목표설정 기준)	내용	지표 예시
과거실적 기준	과거 3년간 평균치	발전기금 조성 실적
절대목표 설정	과거실적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임의의 목표 설정	교원확보
개선형	전년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의 향상을 도모	석박사학위 취득률

## ■ 평가 영역별 체계

평가 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평가항목/지표	가중치
	학위취득	30	박사학위 취득률	60
	¥1771=	30	석사학위 취득률	40
	장학금수혜	15	장학금 수혜율	100
학생	학생충원	25	신입생 충원율	100
(50)	휴학 및 중도탈락	20	중도탈락학생비율	40
	유식 옷 정도르다	20	휴학생 비율	60
	외국인 및 새터민	10	외국인학생비율	60
	되독한 중 제대한		새터민학생비율	40
	연구업적	40	학술지게재논문실적	60
	연구합적	40	저역서 실적	40
교수 (30)	연구비수혜	30	연구비수혜실적	100
(00)	701		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	3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50
대학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	50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금 유치실적	50
(20)	성폭력 예방교육	50	성폭력방지에 따른 예방교육실적	50

## ■ 지표별 환산점수 기준표

## ① 학위취득률 환산점수표

비율(%)	석사	비율(%)	박사	비고
20% 이상	6	3% 이상	9	
15% 이상 20% 이하	5	2% 이상 3% 이하	8	
10% 이상 15% 이하	4	1% 이상 2% 이하	7	
5% 이상 10% 이하	3	0% 이상 1% 이하	6	
5% 이하	2	0% 이하	5	

#### ※등급 기준

OIN LU	석/박사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15			
우수	14			
보통	13			
미흡	12			
매우미흡	11이하			

## ② 재학생1인당 장학금수혜 환산점수표

금액	환산점수	비고
100만원 이상	7.5	최우수
70만원-99만원	7	우수
50만원-69만원	6.5	HT 에
10만원- 49만원	6	
9만원 이하	5.5	매우미흡

## ③ 신입생 충원률 환산점수표

비율(%)	환산점수	비고
100% 이상	12.5	최우수
90% 이상 100% 이하	12	우수
80% 이상 90% 이하	11.5	K 왜
70% 이상 80% 이하	11	
70% 이하	10.5	매우미흡

## ④ 중도탈락 및 휴학 환산점수표

비율(%)	중도탈락	효학	미고
10% 이하	4	6	
11% 이상 12% 이하	3	5	
13% 이상 20% 이하	2	4	
21% 이상 30% 이하	1	3	
30% 이상	0	2	

## ※등급 기준

= -	중도탁락 및 휴학생
등급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이하

## ⑤ 외국인 및 새터민 환산점수표

비율(%)	외국인	새터민	비고
3% 이상	3	2	
2% 이상 3% 이하	2.5	1.7	
1% 이상 2% 이하	2	1.5	
0% 이상 1% 이하	1.5	1.3	
0% 이하	1	1	

## ※등급 기준

	외국인 및 새터민
<u> </u>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5
우수	4점이상-4.9점이하
보통	3점이상-3.9점이하
미흡	2점이상-2.9점이하
매우미흡	1점이상-1.9점이하

## ⑥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물 환산점수표

비율(%)	논	문	저서		비고
	국내	국제	국내	국제	
0.5% 이상	4.2	3	3	1.8	
0.3% -0.4%	4	2.5	2.5	1	
0.1% -0.3%	3.2	2	2	0.5	
0.1% 미만	0	0	0	0	
특별가산점	į	5	5		A급 국제학술지 (AHCI, SSCI, SCI, SCIE)

### \*등급 기준

디미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11점이상-12점이하	
우수	9점이상-10.9점이하	
보통	6점이상-8.9점이하	
미흡	4점이상-5.9점이하	
매우미흡	2점이상-3.9점이하	

## ⑦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환산점수표

급액	환산점수	디
2000만원 이상	9	최우수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8	우수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7	보통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6	미흡
500만원 이하	5	매우미흡

## ⑧ 교원확보 및 전임교원1인당 학생 환산점수표

비율(%)	교원확보	학생수	전임교원1 인당학생	비고
100% 이상	4.5	1명 이상 15명 이하	4.5	
90% 이상 100% 이하	4	15명 이상 19명 이하	4	
80% 이상 90% 이하	3.5	19명이상 25명 이하	3.5	
70% 이상 80% 이하	3	25명 이상 30명 이하	3	
70% 이하	2.5	30명 이상	2.5	

### ※등급 기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교원 및 교원1인당학생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9
우수	8점이상-8.9점이하
보통	7점이상-7.9점이하
미흡	6점이상-6.9점이하
매우미흡	5점이상-5.9점이하

## ⑨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 환산점수표

금액	발전기금	외부장학	비고
6000만원 이상	5	5	
2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4	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2	
500만원 이하	1	1	

#### ※등급 기준

UD (1)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
	환산점수 합계
최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 ⑩ 성폭력방지에 따른 예방교육실적 환산점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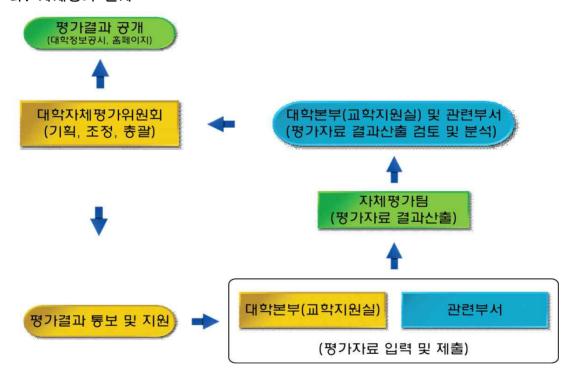
교육참여율(%)	환산점수	LI LI
100% 이상(기관장포함)	10	최우수
90% 이상 100% 이하(기관장포함)	9	우수
80% 이상 90% 이하	8	보통
70% 이상 80% 이하	7	미흡
70% 이하	6	매우미흡

#### ■ 평가 결과의 도출

- 평가결과는 점수로 산출하되. 결과를 등급으로 표시하여 공시
- 대학전체의 평가결과뿐 아니라 평가영역, 부문, 항목/지표별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발표, 공시

점수	00 UT
90점 이상	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흡
60점 이하	매우 미흡

#### 다. 자체평가 절차



#### 라.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핵심

- 대학원대학교의 특성상 타대학과의 비교가 곤란
- 대학원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 기준 설정
- 대학의 실정과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목표치와의 비교가 핵심

### 3. 2023년 자체평가 결과

#### 가. 총평

- 대학 전체의 평가 결과와 3개 영역 및 9개 평가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휴학 및 중도탈락,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우수> 및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됨.(영역별 평가결과 참조)
- 부문별로 보면 학위취득, 장학금수혜현황, 외국인 및 새터민현황, 연구업적, 연구비수혜현황, 교원확보현황,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 부문이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신입생 충원율 부문이 <우수> 등급, 휴학 및 중도탈락현황, 성폭력 예방교육현황 부문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2021년 자체평가결과 대비 신입생에 대한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재학생 1인 당 장학금수혜가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위과 정 장학생 유치로 인해 외국인 및 새터민현황과 외부장학금 유치 현황이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었음. 하지만, 북한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률이 <최우수>에서 <우수>로 코로나 팬데믹의 휴우증으로 휴학생이 늘어 중도탈락 및 휴학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향 평가되어 개선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됨.

#### 나. 영역별 평가결과

평가 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평가항목/지표	가중치	평가결과	최종결과
학생 (50)	학위취득	30	박사학위 취득률	60	최우수	최우수
			석사학위 취득률	40		
	장학금수혜	15	장학금 수혜율	100	최우수	
	학생충원	25	신입생 충원율	100	우수	
	휴학 및 중도탈락	20	중도탈락학생비율	40	보통	
			휴학생 비율	60		
	외국인 및 새터민	10	외국인학생비율	60	최우수	
			새터민학생비율	40		
교수 (30)	연구업적	40	학술지게재논문실적	60	최우수	
			저역서 실적	40		
	연구비수혜	30	연구비수혜실적	100	최우수	
	교원확보	30	교원확보율	50	최우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50		
대학 (20)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	50	발전기금 및 외부장학금 유치실적	50	최우수	
	성폭력 예방교육	50	성폭력방지에 따른 예방교육실적	50	보통	

## 4. 평가결과 활용계획/평가개선방향

#### ■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방안

- 종합·영역별로 평가결과 발표 및 공시
-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자기점검 체제 구축으로 자율성 신장
- 대학 운영과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차기 평가에 피드백

#### ■ 자체평가 개선방향

- 자체평가가 단순히 순위 매김으로 끝나서는 곤란한 바,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 (quality)을 평가 할 수 있는 정성지표도 적절히 활용되어야 함.
- 자체평가 결과산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평가지표의 적합성, 평가지표의 정량화, 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를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평가지표들을 신규 개발해 나가야 하며, 개발된 자체평가 지표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 실무 담당부서의 교육훈련 강화 필요

#### 자체평가에관한규정

제정 2009.07.24. 개정 2017.05.08. 개정 2021.02.2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영역) ① 평가의 대상은 본교의 모든 기관(하부조직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 ② 자체평가의 영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의 공시대상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학교발전계획 및 경영
  - 2. 교육
  - 3. 연구
  - 4. 학생지원
  - 5. 국제화
  - 6.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 제3조(시기 및 공시) ① 자체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방법, 범위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자료 작성 및 실사) ① 자체평가의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자체평가팀(이하 평가팀)을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자체평가의 기획 · 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4.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8조(평가팀의 조직 및 기능)** ① 평가팀의 팀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맡으며, 팀원은 2인 이상 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평가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체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의 실시
  - 2.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집필
  - 3. 자체평가관련 행정업무
  - 4. 기타 자체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 **제8조의2(평가방법)** 총장은 영역별 지표와 항목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 평가점 수의 산출기준과 항목별 평가등급 등은 따로 정한다.
- 제9조(평의원회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9.0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08.)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